

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-196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3년 12월 23일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

위원장 이준구

1. 수정이유

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선정이 중요함으로 안 제5조(남북교류협력위원회) 제3항제1호의 『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·단체에 근무하는 자』를 『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·단체에 소속된 자중 기관·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』로 수정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5조(남북교류협력위원회)제3항제1호의 『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·단체에 근무하는 자』를 『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·단체에 소속된 자중 기관·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』로 수정함.

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3항제1호중 “기관·단체에 근무하는 자”를 “기관·단체에 소속된 자중 기관·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”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 (남북교류협력위원회)① ~ ③(생 략) 1.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있는 기관·단체에 근무하는 자 2~3 (생 략) ④ (생 략)	제5조 (남북교류협력위원회)①~③ (제정안과 같음) 1. ----- 소속된 자중 기관·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2~3(제정안과 같음) ④ (제정안과 같음)